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1.2em; margin: 0;">http://www.daedeok.go.kr</p>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18-34
2018. 4. 27.(금)

차 례

훈 령(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훈령 제428호)1

고 시(5)

- 대전 도시관리계획(특수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시 제2018-60호)4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고시 제2015-61호)6
- 도시계획시설(범바위·소룡골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고시 제2018-64호)7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고시 제2018-65호)9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고시 제2018-66호)10

공 고(10)

- 산디마을 생태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체결(기간연장) 공고(공고 제2018-372호)11
- 대청수상레포츠센터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체결 공고(공고 제2018-377호)12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주차장) 공사완료 공고(공고 제2018-378호)13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공고 제2018-386호)14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8-387호)15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8-388호)16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8-389호)17

차 례

- 장동경관농업 보전협약 체결 공고(공고 제2018-390호)18
-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공고 제2018-392호)20
- 2018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 (변경)공고(공고 제2018-393호)23

입법예고(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18-391호)35

공 람									
--------	--	--	--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수범

2018년 4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42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등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직 등의 정수표 (제7조 관련)

(단위:명)

부서별 직종별	계	단순노무	기술인부	공사인부	환경관리 요원	행정실무원	청원경찰		
							소계	경비	단속 감시
총 계	194	31	13	28	87	25	10	7	3
본 청	170	24	12	28	87	9	10	7	3
기획감사실	1	1 구청홍보자료수집							
총 무 과	12	8 취사인부 4 비서실 민원처리 보조 1 비서실 및 부속실운영지원 2 복무관리 시스템 운영 1	1 영양사				3	3	
자치행정과	2	2 전화안내원 1 자원봉사관리 1							
문화체육과	3	2 체육관관리					1	1	
세 무 과	1		1 채납징수						
민원지적과	4	4 기록물관리 2 가족관계등록관리 1 도로명주소관리 1							
복지정책과	4					4 통합사례관리사			
사회복지과	3	1 장애인편의시설관리				2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여성가족과	3					3 드림스타트			
청소위생과	90		2 불법투기단속	1 재활용인부	87 환경관리요원				
도시재생과	3						3		3
안전총괄과	1	1 민방위시설관리							
공원녹지과	14	1 민원안내 및 전시시설 관리		10 공원녹지관리			3	3	
건 축 과	6	1 광고물사무	3 광고물정비 2 위반건축물정비 1	2 청사실외청소					
건 설 과	21	1 지하수검침	5 노점상단속	15 도로보수 8 하수도보수 7					
교 통 과	2	2 주차장시설유지관리							
의회사무과	1		1 음향기기관리						
보 건 소	16					16 예방접종등록센터 1 통합건강증진사업 15			
평생학습원	4	4 도서정리							
송 춘 민 센 터	2	2 송춘문화의집 관리							
신 탄 진 동 행 센 터	1	1 신탄문화의집 관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무직 등의 일부 직종에 대한 정수 조정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조직 문화와 성과창출을 위해 공무직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술인부에 대한 정원 조정 (별표).

당초 12명 ⇒ 변경 13명 (증 1명)

부서	직종	당 초	변 경	비고
건축과 (6)	기술인부	3 <u>광고물정비 3</u>	3 <u>광고물정비 2</u> <u>위반건축물정비 1</u>	변경없음
건설과 (21)	기술인부	<u>노점상단속 4</u>	<u>노점상단속 5</u>	당초 4 변경 5(증 1)

○ 청원경찰에 대한 정원 조정(별표).

당초 11명 ⇒ 변경 10명 (감 1명)

부서	직종	당 초	변 경	비고
건설과 (21)	청원경찰	<u>단속감시 1</u>	<u>(삭 제)</u>	당초 1 변경 0(감 1)

대전 도시관리계획(특수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용호동 55번지 일원의 학교(초등학교)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학교:특수학교)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고시문 및 지형도면 열람가능)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과(042-608-510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4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도로)

1)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용정(분교)	대전 행복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 덕 구 용 호 동 55번지 일원	16,899	감)44	16,855	대덕군교육청1호 (1983.11.23)	

2) 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전행복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명 : 용정(분교) → 대전 행복학교 시설의 종류 : 초등학교 → 특수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 학생들의 자립능력을 키워 학교를 졸업 후 사회 구성인으로 더불어 사는 삶으로 사회통합에 기여 특수학급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지역별 균형배치를 통한 장애아동의 특수교육 기회 확대

② 도시관리계획(도로) 지형도면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결정고시	대전 행복학교	특수학교	대덕구 용호동 55번지 일원	16,855	대덕군교육청1호 (1983.11.23)	
기승인	용정 (분교)	초등학교	대덕구 용호동 55번지 일원	16,899		
금회승인	대전 행복학교	특수학교	대덕구 용호동 55번지 일원	16,855		

3. 관계도서(도면포함) : 게재생략. 끝.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가. 승인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 대덕구청장(공원녹지과)/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나. 공사 내용

- (내용) 2018 사방사업 (인공구조물 설치(사방댐 및 계류보전))
-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523 일원

다.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2018. 4.
- (준공예정일) 2018. 12. 31.

라.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수리 일자

- 2018. 4. 25.

도시계획시설(범바위·소룡골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노후 된 어린이공원을 정비하여 도심 속 녹색 공간 확보로 지역 소통의 장 조성 및 주민 휴식, 어린이들의 문화향유와 정서함양 공간을 제공하는 도시계획시설(범바위·소룡골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덕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 등에게 보여드립니다.

2018년 4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2동 195-2번지 / 범바위어린이공원
-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2동 197-1번지 / 소룡골어린이공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정비)사업
- 사업의 명칭 : 범동 노후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다. 사업의 규모

- 공원총면적 : 3,683m²
- 사업면적
 - 범바위어린이공원 : 2,200m²
 - 소룡골어린이공원 : 1,483m²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 부터 ~ 2018.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부조서

구,시	동,면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합 계				3,683	3,683					
대덕	법2동	195-2	공원	2,200	2,200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			
대덕	법2동	197-1	공원	1,483	1,48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			

사. 공람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원녹지과(☎ 042-608-5382)

아. 관계도서 : 게재생략. 끝.

지 적 기 준 점 성 과 고 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4항 및 「지적측량시행
규칙」 제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과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기준점 종 류	기준점 번 호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평면직각종형선좌표		평면직각종형선좌표		
		X 좌 표	Y 좌 표	X좌표	Y좌표	
도근점	2732	-	-	327032.20	238623.81	신설
도근점	2733	-	-	327043.13	348694.79	"
도근점	2734	-	-	327123.13	238904.51	"
도근점	5016	327080.26	238782.52	327081.97	238777.17	재설치
도근점	5728	327109.25	238578.63	327012.47	238700.18	"
기 준 원 점 명		중부원점				
소 재 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일원				
측 량 년 월 일		2018년 04월 20일				
측 량 성 과 보 관 장 소		대덕구청 민원지적과				
비 고		표지재질(철재)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부 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 고
비래동 149-14, 15	우암로 420	2018.4.27.	건물신축	역사적 인물 우암송시열을 기리기 위하여 명명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지적과(☎042-608-5307)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산디마을 생태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체결(기간연장)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운영조례」 제13에 의거 산디마을 생태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관리·운영을 위한 위·수탁 협약(기간 연장)을 체결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협 약 일 : 2018. 4. 20.

2. 위탁기간 : 2018. 5. 1. ~ 2021. 4. 30.

3. 위탁범위

○ 산디마을 생태공원 오토캠핑장 및 부대시설의 관리·운영 전부

4. 수탁기관

수탁기관	대 표 자	주 소	비 고
장동영농법인	황태문	대전 대덕구 장동 336	

5. 위탁시설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비 고
산디마을 생태공원 오토캠핑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658-1번지 일원	사이트 17면	3,868.8m ²	
		관리사무소1동	5.7m ²	
		농산물공판장1동	9.6m ²	

대청수상레포츠센터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체결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대청수상레포츠센터 민간위탁 관리·운영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협약일 : 2018. 4. 24.
2. 위탁기간 : 2018. 5. 1. ~ 2021. 4. 30.
3. 위탁범위
 - 대청수상레포츠센터 및 부대시설의 관리·운영 전부

4. 수탁기관

수탁기관	대표자	주소	비고
(사)대전대덕스포츠클럽	장길완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86번길 85(목상동)	

5. 위탁시설 현황

구분	위치	면적	주요시설
관리동(I) 및 계류시설	에코공원	172.34㎡	▶ 관리동 1층(88.34㎡) : 샤워실(2), 탈의실(2), 화장실(2) ▶ 관리동 지하1층(84㎡) : 사무실(1), 창고(1)
		89.64㎡	▶ 계류시설(승선장), 안전펜스, 도크시설
		-	▶ 주차장, 기타 부대공 1식
관리동(II) 및 계류시설	산호빛공원	89.64㎡	▶ 계류시설(하선장)
		-	▶ 주차장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주차장) 공사완료 공고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주차장)에 대하여 공사완료 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도시재생과(☎042-608-5113)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4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아 래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주차장)
- 사업의 명칭 : 산디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 : 대덕구 장동 670번지 일원

다. 사업의 규모

- 도로 확·포장 L=207.0m, B=10.0m, 주차장 조성 A=270.0㎡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덕구청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마. 사업시행기간 : 2016. 12. 16. ~ 2018. 4. 30.

바. 관계도서 : 게재생략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38-3외 2필지 상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아 래

1. 공고하는 사항

구 분	위 치	도 로 구 분			소유자
		면 적	너 비	길 이	
건축법상 도로지정	신일동 38-3 번지	28㎡	6m	25m	최인기
	신일동 38-8 번지	328㎡	6m	35m	김우겸, 유정희
	신일동 산15-1 3번지	430㎡	6m	45m	김우겸, 유정희

2. 기 타

위 사항에 대한 관련도서는 대덕구청 건축과(☎042-608-5153)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 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점용장소 및 내역 :

허가 번호	점용 목적	굴착장소	시행자 (점용자)	시설물 종류	포장종류	굴착 연장 (m)	굴착 면적 (㎡)
2018-19호	도시가스관 매설	계	CNCITY 에너지	도시가스	아스팔트 콘크리트 투수콘	261.0	313.2
		석봉동 311-2번지 일원				261.0	313.2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

3. 공사 실시방법 : 노면 굴착

4. 도로굴착 및 복구주체 : 원인자(피허가자) 복구

5. 굴착 시 교통 대책 : 교통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시설 설치 등

6. 기 타 사 항 : 타 지하시설물 관련기관과 협의시행 및 허가조건 준수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점용장소 및 내역 :

허가 번호	점용 목적	굴착장소	시행자 (점용자)	시설물 종류	포장종류	굴착 연장 (m)	굴착 면적 (㎡)
2018 -20호	도시가스관 매설	계	CNCITY 에너지	도시가스	아스팔트 소형고압블럭	23.0	27.6
		신탄진동 153-4번지 앞				6.0	7.2
		오정동 382-3번지 앞				5.0	6.0
		오정동 496-1번지 앞				2.0	2.4
		중리동 108-7번지 앞				9.0	10.8
		평촌동 542-23번지 앞				1.0	1.2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

3. 공사 실시방법 : 노면 굴착

4. 도로굴착 및 복구주체 : 원인자(피허가자) 복구

5. 굴착 시 교통 대책 : 교통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시설 설치 등

6. 기 타 사 항 : 타 지하시설물 관련기관과 협의시행 및 허가조건 준수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점용장소 및 내역 :

허가 번호	점용 목적	굴착장소	시행자 (점용자)	시설물 종류	포장종류	굴착 연장 (m)	굴착 면적 (㎡)
2018 -21호	도시가스관 철거	계	CNCITY 에너지	도시가스	아스팔트	2.0	4.0
		오정동 478-10번지 앞				2.0	4.0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

3. 공사 실시방법 : 노면 굴착

4. 도로굴착 및 복구주체 : 원인자(피허가자) 복구

5. 굴착 시 교통 대책 : 교통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시설 설치 등

6. 기 타 사 항 : 타 지하시설물 관련기관과 협의시행 및 허가조건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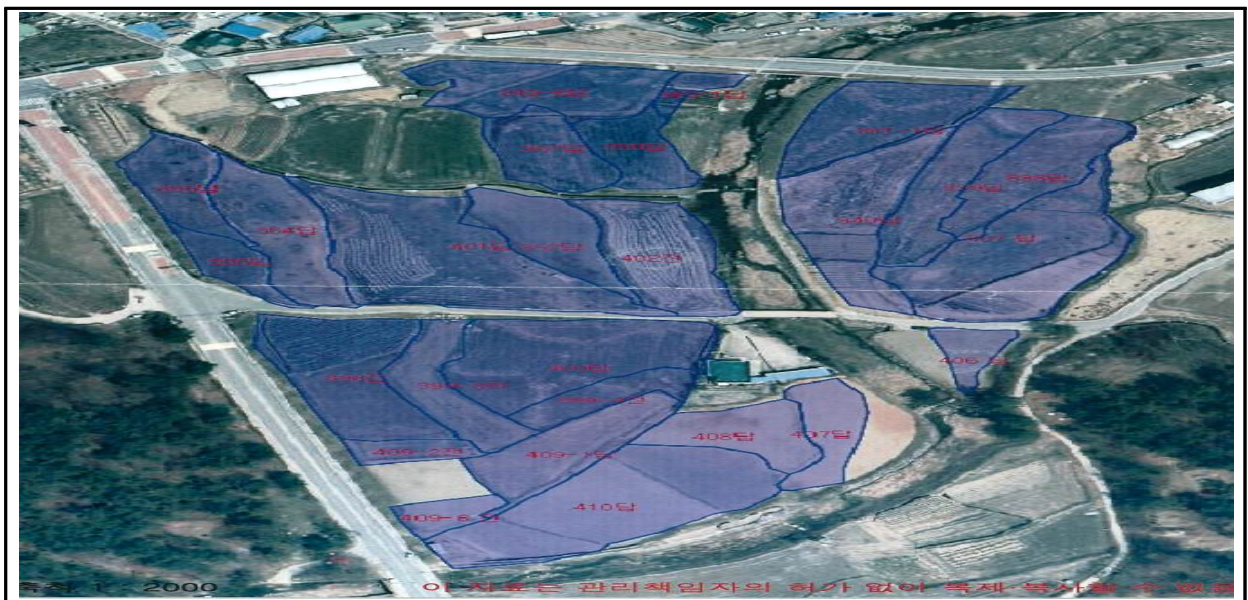
장동경관농업 보전협약 체결 공고

장동 지역에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마을 내 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도농교류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장동경관농업」의 보전협약을 체결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협약일자 : 2018. 1. 3.
2. 장 소 : 대덕구 별관 3층(경제과 사무실)
3. 대상필지 : 26필지 38,845m²
4. 대 상 자 : 장동경관농업 경작자 14명
5. 공고기간 : 2018. 4. 27.(금) ~ 5. 14.(월)
6. 경관농업단지조성 대상지 현황



6. 경관농업단지조성 대상 토지 현황

연번	대 상 토 지 (㎡)					연번	대 상 토 지 (㎡)					비 고
	소재지		지번	지목	필지면적 (㎡)		소재지		지번	지목	필지면적 (㎡)	
	구	동					구	동				
1	대덕구	장동	349-6	답	1,855	16	대덕구	장동	399-3	전	1,229	
2	대덕구	장동	350	답	775	17	대덕구	장동	399-4	전	734	
3	대덕구	장동	351	답	1,160	18	대덕구	장동	400	답	2,714	
4	대덕구	장동	352	답	1,355	19	대덕구	장동	406	답	377	
5	대덕구	장동	354	답	1,785	20	대덕구	장동	407	답	642	
6	대덕구	장동	355	답	1,108	21	대덕구	장동	408	답	1,187	
7	대덕구	장동	356	답	634	22	대덕구	장동	409-1	답	1,537	
8	대덕구	장동	401	답	3,706	23	대덕구	장동	409-2	전	442	
9	대덕구	장동	402	전	1,848	24	대덕구	장동	343-1	답	243	
10	대덕구	장동	337	답	3,174	25	대덕구	장동	410	답	2,757	
11	대덕구	장동	338	답	1,557	26	대덕구	장동	409-6	전	446	
12	대덕구	장동	339	답	1,633							
13	대덕구	장동	340	답	2,159							
14	대덕구	장동	341-1	답	1,469							
15	대덕구	장동	398	전	2,319	계		26필지			38,845	

7.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대덕구 경제과{☎(042)608-6942}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 · 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I.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1. 공시기준일 : 2018년 1월 1일
2. 대 상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옛신탄진로 235(오정동 9-20번지) 외 10,961호
3. 공 시 사 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개별주택가격 등
4. 열 램 장 소 : 대덕구청 세무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세정도우미(<http://daejeon.go.kr/tax/index.d>)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II.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1. 신 청 기 간 : 2018. 4. 30. ~ 5. 29.
2.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신 청 방 법 : 이의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대덕구청 세무과 또는 대전시 홈페이지 세정도우미, 일사편리 홈페이지에 제출
4. 결 과 통 지 :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이의신청 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대덕구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580호의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2018. 1. 1일 기준으로 한국감정원 3인이 표준주택을 감정 평가한 후 그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주건물 구조가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실 때는

대덕구청 세무과 및 대전시 홈페이지 세정도우미(<http://daejeon.go.kr/tax/index.do>), 일사편리 홈페이지(<http://kras.go.kr>)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주택	소재지 및 지번	
이의신청 내용	공시가격	의견가격
	원	원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에 따라 년 월 일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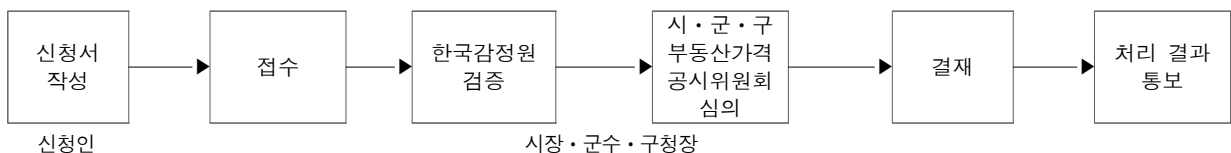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2018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 (변경)공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4조 및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 제5조 및 제21조에 근거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신청기간 : 2018. 3. 12. ~ 예산소진 시 까지(선착순 접수)

※ 기 신청기간 : 2018. 3. 12. ~ 4. 30.(선착순 접수, 예산소진 시 종료)

2. 신청대상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 일조량이 확보되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빌라) 거주자 중 설치를 희망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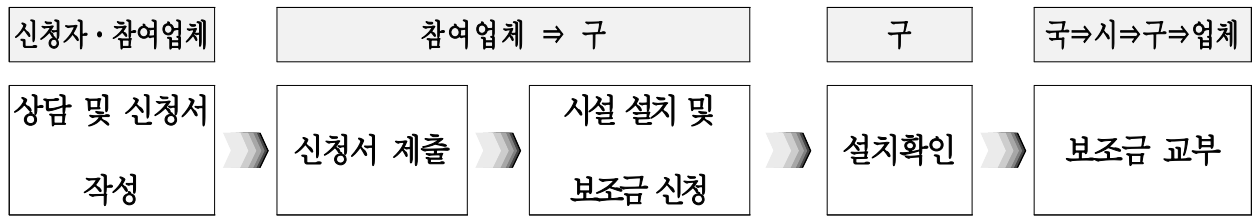
3. 지원내용 : 설치비의 85% 정액지원(설치비 804,000원 중 683,400원 지원)

○ 설치용량 : 300W급 미니태양광 / 콘센트 연결형

○ 총 예산 : 205,020천원 / 국비 60,300 시비 120,600 구비 24,120

○ 사업량 : 300가구

4. 추진절차 및 세부내용



①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설치를 원하는 자는 참여업체와 충분한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참여업체는 대덕구 경제과로 신청서류 제출

- 신청인 해당 공동주택(아파트, 빌라)의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운영관리규약 상 사전 동의를 반드시 득하고 신청해야 함

② 미니태양광 시설 설치 : 참여업체에서 실시

연번	참여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비고
1	(주)대덕전력에너지	633-7799	대전 대덕구 대화로125(대화동)	
2	한빛이디에스(주)	862-5882	대전 유성구 테크노 10로 44-10(탑립동)	
3	이솔라텍(주)	1588-1937	대전 서구 청사로 136, 12층 1264호(월평동)	

③ 보조금 신청 : 참여업체가 설치완료 후 보조금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2018. 11. 30.까지 대덕구 경제과로 제출

- 제출서류 : 보조금 신청서, 표준 설치계약서, 설치확인서, 현장점검표, 준공사진, 참여기업 대표자 통장 사본

④ 설치확인 : 설치 완료된 가구에 대하여 현장 확인(대덕구 경제과)

⑤ 보조금 지원 : 신청자는 총 비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액만 참여업체에 지급하고, 보조금은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참여업체가 수령

5. 기타 문의사항 : 대덕구 경제과(☎ 608-6931~5 / 담당자 : 6934)

- 붙임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신청서
2. 표준 설치계약서
3.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4. 설치확인서
5.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6. 준공사진
7.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명판 양식

(붙임4)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설치확인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참여자(신청인, 참여업체)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확인 후)

- | | |
|--|--------------------------|
| 1. 보급업체는 신청인이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인은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소홀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input type="checkbox"/> |
| 2. 구조물 및 제품의 A/S 주체는 보급업체이므로 신청인은 참여기업과 계약체결 시 업체의 무상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정해야 하며,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수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 <input type="checkbox"/> |
| 3. 설비의 설치장소와 관련한 일조권 또는 조망권 분쟁, 신축되는 건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대전시는 개입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nput type="checkbox"/> |
| 4. 신청인 및 보급업체는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보급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input type="checkbox"/> |
| 5. 신청인은 설치확인 일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input type="checkbox"/> |

미니태양광 설치와 관련하여 신청자는 확인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 | |
|--|--------------------------|
| 1. 미니태양광 설치확인 현장점검표에 의거 설치를 확인함 | <input type="checkbox"/> |
| 2. 원하는 장소에 설치되었고, 태양광 보급설비의 정상가동 됨을 확인함 | <input type="checkbox"/> |
| 3. 설치된 설비의 매뉴얼 제공 및 참여업체로부터 운전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함 | <input type="checkbox"/> |

년 월 일

신청인

인

참여업체

인

(붙임5)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니태양광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설치개요

확 인 사 항		내 용					
설 치 형 태		<input type="checkbox"/> 난간상부 거치형 <input type="checkbox"/> 난간하부 거치형					
설치경사각 및 방향		모 들	방위각()도, 경사각()도,				
설 치 위 치		<input type="checkbox"/> 난간상부 (개소) : 결속지점 (개소) <input type="checkbox"/> 난간하부 (개소) : 결속지점 (개소) <input type="checkbox"/> 기 타 () : 결속지점 (개소)					
모 들		모델명		출력(Wp)		수량(매)	
인 버 터		모델명		정격용량(kw)		수량(매)	
설치모듈	수 량	W × 매					
	직렬수(단)	() 직렬		병렬수(열)		()병렬	
총 설치용량		모듈	kw	인버터		kw	
계통연계 방식		<input type="checkbox"/> 콘센트 연결형					

가동상태

종 류	확인사항	내 용
동작상태 확인	확인일시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확인항목	외기온도 (°C), 날씨 ()
	인 버 터	전압AC(V), 전류AC(A), 주파수(Hz), 일사량(W/m ²)
	인버터 출력	kw (시 분)

□ 설치상태

NO	항 목		점검위치	점검방법	판정기준	판정
1	태양 전지판	모듈	모듈 후면 또는 측면	명판의 모델, 용 량 확인	인증제품 또는 시험성적서	<input type="checkbox"/> 적 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제외
		설치용량	모듈 전면	모듈매수 확인	설계용량 이상	<input type="checkbox"/> 적 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제외
		음영발생	모듈 전면	육안확인	음영발생 여부	<input type="checkbox"/> 적 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제외
2	인버터	사 양	인버터 전면 또는 측면	명판의 모델, 정 격용량	인증제품(없을 경우 시험성 적서와 일치)	<input type="checkbox"/> 적 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제외
					정격용량은 설계치 이상	<input type="checkbox"/> 적 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제외
		설치상태	노출전선	방수처리	옥외 노출배선의 방수처리 전선 사용 및 배란다형 물 딩상태 확인	<input type="checkbox"/> 적 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제외
			설치위치	육안검사 및 절 연검사	절연체 종류 및 인버터 설 치위치 현장 확인	<input type="checkbox"/> 적 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제외
		인버터 설치용량 및 입력전압	인버터 및 모듈	인버터 입력 및 모듈 출력 확인	* 모듈 설치용량이 인버터 설치 용량의 105%이내 * 모듈 개방전압(후면 명판) 은 인버터 입력전압(인증 서, 시험성적서)의 범위 이내	<input type="checkbox"/> 적 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제외
		표시사항	인버터 또는 별도 표시창	육안 확인	모듈 및 인버터의 출력 역전 압, 전류, 전력, 역율, 주파 수, Peak, 누적발전량	<input type="checkbox"/> 적 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제외

(붙임6)

준공사진

< 촬영일자 : (참여업체 :) >

설치 전	설치 후
설치 전	설치 후

(붙임7)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명판 양식

설비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니태양광		<p>- 부착방법 : 스티커 형태로 제작</p> <p>- 규 격 : 가로 12cm, 세로 8cm</p> <p>- 부착방법 :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태양전지 모듈 뒷면에 설치업체가 부착</p>
용 량			
준공연도			
하자보증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하자보증기간 이후에는 자부담 수리)		
참여업체	기 업 명 :		
	대표전화 :		
	홈페이지 :		
	A/S 책임자	성 명 :	
직통전화 :			
휴 대 폰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규제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을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9조).
- 나. 상위법령 개정으로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에 대한 규제 조항을 삭제함.

제함(안 제24조)

- 다. 옥외광고사업자의 교육계획 공고기한과 교육 위탁사업자의 교육계획 수립 제출기한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25조부터 안 제26조까지).
- 라. 상위법령 개정으로 음식판매자동차 광고 허용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정함(안 별표 3).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과(T: 042-608-5182, FAX : 042-608-3843 , E-mail : k73s2@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과 담당자 김선숙(전화 : 042-608-518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구성한다.”
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
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별지 제7호”를 “별지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
지 제8호”를 “별지 제9호”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 중 “10월”을 “12월”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질서위반
규제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향토예비군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교육계획”을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으로, “2월”을 “11
월”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7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4,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40,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5㎡ 이하	20,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10,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면적 10㎡ 이하	40,000원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6,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면적 10㎡ 이하	20,000원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20,000원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3,000원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13,000원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4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자동차·음식판매자동차 	10,000원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5,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5,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현수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현수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m² 이하 - 10m² 초과시 1m²마다 더하는 금액 2) 지정계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m² 이하 - 10m² 초과시 1m²마다 더하는 금액 	6,000원 1,500원 6,000원 1,000원
파. 벽보(1건)	5,000원
하. 전단(500매마다)	5,000원
거. 전자게시대(1건)	6,000원
너.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4.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5. 현수막 지정계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구청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	------------------------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참조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주민협의회 운영) ① (생략)</p> <p>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p>	<p>제9조(주민협의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4항</u>-----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구성</u> <u>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제21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p> <p>① ~ ② (생략)</p> <p>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u>별지 제7호</u> 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구청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u>별지 제8호</u> 서식에 따른다.</p>	<p>제21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별지 제8호</u>----- ----- -----.</p> <p>④ ----- ----- -----<u>별지 제9호</u>-----.</p>

<p>제24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p> <p>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p><삭 제></p>
<p>제25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제25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현행과 같음)</p> <p>② -----12월-----</p> <p>-----</p> <p>-----</p> <p>-----</p>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주민협의회 운영) ①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주민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작성 및 자율관리구역 지정의 신청
2.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6.>

1.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 가.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시장등이 보수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나.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하는 경우

3.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한 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 자동차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6.7.6., 2017.12.29.>

1.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뒷면 또는 버스돌출번호판(버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입문 개방 시 돌출되게 설치한 번호판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